

<녹 취 전 문>

과제명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면담자	신동호	면담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자택
면담일시	2019. 9. 26. 14:00	회차	1회차

1. 근황 및 어린 시절의 역경

면담자: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의 1차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분들의 과거의 재판 경험과 헌법 철학을 생생한 육성과 동영상으로 담아 헌법재판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 일시는 2019년 9월 26일 오후 두 시, 구술 장소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 반포아파트 재판관님의 자택입니다. 면담자는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 신동호입니다. 재판관님, 2005년 3월에 퇴임하시고 그 후로 14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변호사를 개업하셨다가 그것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나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2005년 3월에 헌법재판소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반납을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당뇨를 제가 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당뇨가 마흔 아홉부터 발병이 돼가지고 올해가 지금 80세니까 쪽 당뇨병을 앓고, 그래서 뭐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면담자: 재판관님 8남매의 장남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해서 성취

를 이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경험들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구술자: 어렸을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는데, 이걸 물으시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열한 살 때, 국민학교 5학년 올라갔을 때 6.25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2년 정도는 아버지가 장사하시는데 거드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2년 늦게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집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은 학교로 용산중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내고 바로 다음날 어린이 신문이 왔어요. 거기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2학년, 김진태라는 학생이 뉴욕 “헤럴드트리뷴(Herald Tribune)”에서 하는 영어 웅변대회에 갔다 왔다는 게 어린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라는 데가 어떤 학교냐”고.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지.” “아 그러면 선생님 왜 용산중학을 얘기하시고 경기중학은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경기중학교 원서를 사왔어요. 사다가 경기중학에 내고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한남초등학교에선 경기중학교에 가는 아이가 없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거길 간 거지. 우리 후배가 한 사람이 또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썸 됐는데 집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때 교통고등학교를 가나 어떡하나 고민을 했다고. 그런데 교통고등학교 가게 되면 돈 안 들고, 장학금으로 그냥 쪽 다니게 되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만류를 했어요. 왜 만류를 했냐.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국민학교 내내 우등하고 반장하고 그러던 놈이 중학교 가서 이게 우등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앓혀놓고 “야 이놈아, 너 왜 이 모양이냐” 야단을 치시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

고 우등을 했어요. 중3 때 한 630명 되는 가운데서 한 20등, 고1 때도 20등, 고2부터는 내가 못 하는 건지,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때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우등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졸업을 했지. 그랬는데 그때 중 3을 졸업하고 교통고등학교에 갈 뻔하다가 담임선생님이 “공부도 잘 하고 그랬는데, 너 교통고등학교 뭐하러 가냐, 거기 졸업하면 기차 운전수나 하고 그럴 텐데 그거 하고 그냥 그만두긴 너 좀 아깝다, 그러니까 어디 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을 가도록 해보라”고. 그때 담임선생이 공민 선생님인데, 이민형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걸 꼭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집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서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뭐 동생들 많지 뭐 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자려니까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나가서 앞애가 철로 길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한번 죽을 뻔했어요. 거기 가서 참고서를 들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 앞으면 왜, 따로 앉아서 하든지, 왜 기차길에 앉아서 공부를 해. 아니 갑자기 차가 꺾 꺾거리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비켰는데 겨우 몇 십 미터 바깥에 오면서 기차 소릴 질러서 아휴, 살았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새벽녘에 나가서 한남동에서 삼각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전차 타고 한국은행 앞까지 가서 내려서 거기 가면 남대문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주말에 거길 가면, 일요일 날 가면, 내가 도서관에 들어갈 친구들 중에서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거기 도착해서, 굉장히 일찍 간 거지. 그리고...

면담자: 그때 경기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했다는 얘기도...

구술자: 아 거기 많이 걸었어요. 한남동 기차길 옆이 우리 집이니까 걸어서 저기 장충동에 지금 저 뭐야 무슨 자유센터인가 그 높은 건

물 있지. 그 옆으로 해서 넘어가서 어딘가, 을지로 3가, 종로 3가로 해서 거기 옛날에 창덕여고 있는 그리 넘어가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넘어가서 다니는데. 거기 뭐...

면담자: 걸어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구술자: 그때 뭐 뛰다 걷다 하니까 한 시간 정도면 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옛날에 보니까 판사 하는 사람들이 다 소신껏 일하면서 잘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더라, 너도 할 수 있으면 판사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길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렇게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애들 가정교사 하는 데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교사 할 때도 대학교 때는 축구선수하고 배구선수하고 했다고. 그게 언제나면 대학교 들어가서 가정교사 쪽 하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축구 쪽,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주 발놀림이 좋았어요, 잘하고. 그리고 배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 배구는 9인제 배구할 때 하프센터(half center)를 했어요. 하프센터는 위치를 잘 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대학 때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축구, 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고서 내 몸에 배운 것이 뭐냐면 반칙 안 한다는 걸 그 때 익힌 거 같아, 그거 하면서. 반칙하면 금방 호루라기 부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쪽 그런 결과를 거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정한 그 중학교 들어갈 때 호적등본을 떼어다가 그걸 내야 되는데 그것부터 저한테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왜 아버지가 안하고 날 시켰나’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런 걸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으로 어떻게 아는 듯 모르는 듯하게 자랐지, 내가.

면담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아, 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그때 생각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하도 집이 그냥 어렵고 그러니까. 좀 안됐지만 고시공부 할 때도 법과대학 도서관에 자리를 3번, 4번 맨 앞자리를 잡고 갔긴 했는데, 좀 안됐지만 옛날 얘기니까 다 해야 되겠는데, 도시락에 개떡을 싸가지고 다니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떡을 어머니가 싸 주는데 그것을 어디 뭐 대놓고 친구들 앞에 먹을 수 없어서 도서관 앞에 그늘 밑에서 그걸 먹고 있으려면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지나치려면 덮어놓고 또 딴 얘기하다가 먹고. 도서관에 있다가 나오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프고 그래. 뒷골이 무겁고. 그래 또 나와서 좀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영양실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친구들이 나가서 대학 때 축구하고 배구하고 그럴 때 나는 한 다섯 시쯤 되면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뭐 이러다가 그때 이제 10월 1일이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이라서 단과대학별 축구 시합 이런 게 있었거든. 법과대학에 4년 동안 나가서 축구 선수를 하고 라이트윙(right wing) 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그때는 축구 시합하고 가정교사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그리고 또 배구 시합도 하고. 배구는 고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배구를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9인제 배구에서 하프센터는 위치가 잘 잡혀야 되니까. 항상 그 위치 잘 잡는 거 연구를 많이 하고.

면담자: 재판관님, 1970년도에 판사로 임관하셔서 부산지방법원장을 끝으로 판사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셨는데 처

음에 임관하셔서 1년 정도 하시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구술자: 그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고시 합격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생님이 그 공민 선생. 날 보고 “교통고등학교에 거길 가서 뭘 하나” 그러고 이제...

면담자: 이민형 선생님.

구술자: 이민형 선생님. 예. 이민형 선생님 그 양반 나하고는 참 특별 인연, 내가 중학교 시험 볼 때 시험 감독을 들어왔던 선생님이요 중 3때 담임선생님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때 청량리중학교에 가서 공민 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그분 생각이 나서 합격하자마자 그 양반한테 달려갔지. 그래서 그 양반이 마침 수업시간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나오셨어. 붙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랬더니. “니가 울 줄 알았다” 그 양반도 우시더라고. 그런 것이 한번 있었어요. 그다음에 뭘 물으셨지?

## 2. 판사 시절 회고

면담자: 아, 처음에 판사로 임관하셨는데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구술자: 1년 있다가 왜 나왔는가 그걸 물으셨죠? 내가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월남 가 있었잖아요. 비둘기 부대. 마치고 돌아와서 2군 사령부 법무관을 했어요. 그때 법무관을 할 때 법무관을 마치고 발령받은 것이 대구지방법원에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받아서, 가서 1년밖에 못 있는 것이 (웃음) 법무관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때 봉급이 5만6000원인가 그랬어요. 그중에 한 2만 원을 집에 동생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쓰시라고 보내드리고 그냥

형편없지, 생활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곤란해서 1년 있다가 그냥 “그만 두겠다”고 그때 법원장 하던 분이 이일규 대법원장,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하신 이일규 법원장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입맛을 썉썉 다시면서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지” 그러고 이제 사표를 받았어요. 나와서 변호사를 시작을 했죠.

면담자: 변호사 해서 수입이 훨씬 나왔습니까.

구술자: 수입이 괜찮았는데, 수입도 내가 4년을 변호사 하다가 복직을 할 때 다른 선배 변호사가 날보고 “당신 얼마쯤 벌었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벌어 모은 거에 일곱 배인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 법관을 하다가 금방 했으니까 뭐, 그야말로 돈 10만원을 받아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5만원 받고 해준 것도 많고. 뭐 그래요 하여튼.

면담자: 그런데 바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까?

구술자: 바로 복직 안 됐는데 내가 변호사 하는 것을 본 어느 선배 변호사가 날보고 법원에서, 법정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나가자고. “내가 보기엔 당신 좀 판사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벌써 나왔냐”고 그래. “아이고, 뭐 아시다시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 하려고 나온 거라”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고, 들어갈려면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 뭐, 바깥에 나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양반이. 아니 가벼운 말투로 “뭐 얘기해 주려면 얘기해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아 고게 끝이 잡혀가지고 다음날 당장 나보

고 행정처 차장을 만나보라는 거야. 그때는 이일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대법관으로 올라가 계시고. 행정처 차장으로, 이름도 다 까먹었다, 어떤 양반이 계시고. 그래 이분이 어떻게 날 얘기 했는가 하니 그날 얘기해준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일규 대법관하고 동기라. 그래 날 알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니 까, 아니 당신이 대구에 계실 때 내가 법원장하실 때 내가 고만 났으니까 잘 알지. “알지, 개 올려보내라”고 그러셔서 그다음날 올라왔죠. 올라와서 차장을 만나니까 대법관 뵈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얘기해 났다고, 내라고. 아이 뭐 벌어 놓은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이 이걸 어떡해. 그렇다고 때 논걸, 빼 낸 걸 다시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채 돈도 못 벌고 그냥 들어왔어요.

면담자: 그렇게 해서 판사 생활 하는 동안 가장 유명했던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12·12 사건, 5·18 사건 재판인데요. 이때 전두환 피고인에게는 사형,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사건들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 문제라던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일담이나 뭐 지금 회고를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술자: 그때 그 특별법이 뭐 하나 나와 가지고, 12·12, 5·18 사건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게 특별법이 현재에도 갖을 거예요. 내가 현재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수사 기록이 내가 그때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가 있었거든요. 형사수석부장을 할 때 부장실 따로 하고 배석 판사실 따로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이 18만5000페이지예요. 그때 내 방에 캐비닛을 다섯 개를 더 들여놨어. 원래 있던 거 외에. 그래 가지고 그게 딱 차



서 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지. 저걸 언제 어떻게 하나, 그해 3월 달부터 8월 26일까지 계속 재판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했던 말이에요. 그것도 아침에 열 시에 들어가면 점심 먹으러 나와서 점심 먹고 오후 두 시에 들어가면 저녁 여덟 시까지 재판했다고. 일주일에 두 번. 잠도 못자고 밤 열두 시까지 그냥 기록 보다가 그때 뭘 전기를 아낀다고 그래서 오후 다섯 시면 에어컨 그것도 다 끄고 그래가지고. 원장이 뭐 요고만한 선풍기 배석 판사들한테 각각 하나씩 하고 나한테 하나 하고 그래 가지고 고걸 보내 줘서 그거 가지고 밤 열두 시까지 앉아서 그걸 보고 열두 시에 또 기록을 싸들고 집에까지 와서 또 보다가 자던가 그래. 또 네 시 쯤 깨. 깨면 하여튼 하루에 세 시간 또는 네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깐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지.

면담자: 그때 그거하고 (몸이)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구술자: 아휴 내가 그때 몸무게가 65.5키로 정도인데 그게 재판 끝나고 재보니까 56.5, 57키로 거기 있었어. 그때 재판하느라고 여덟 시까지 재판하고 배석 판사들 데려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러면, 그것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 양반 저 사람 어떤 무슨 사람들이라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아니까. 아휴, 그래서 저기 청계산 앞에 가서 배석 판사 두 명 데리고 셋이 가서, 입회했던 서기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 고기집이 아주 한참 우리가 온다고 좋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면담자: 그 재판이 일반 법관으로 하는 마지막 재판이었다고.

구술자: 그때 재판할 때 주 2회 저녁 여덟 시까지 재판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배석 판사들은 그때 생각을 잊지 못해가지고 하도 고생을 해서 지금도 8월 26일 되면 한 차례씩 만나요. 연락을 해가지고.

면담자: 그때 그 재판을 맡으면서 굉장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었  
겠죠?

구술자: 그럼요. 우선 그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 예비역 장성이 16  
명, 이견희, 김우중, 정태수 등 재벌 총수가 18명. 이렇게 앞에  
놓고 재판을 하니까 우선 언뜻 생각이 이 재판하면서 내가 그야  
말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우  
선 그 사람들보다 무게도 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재판할 때  
재판부를 상당히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러지. 재판장이 가볍게 그  
냥 어물어물 이러면 이거 재판받는 사람보다 재판하는 사람이  
가벼워서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간단 말이지. 굉  
장히 엄숙하게. 당신들은 재판받는 사람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사람으로 내가 대우한다, 그런 것이 그냥 나와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신문에서 우물우물하고 뭐 어  
떻다 그러고 법원 평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담부터 기자 안  
만났어. 이런 기자들 뭐하러 만나. 그래 법원에 기자들이 들어오  
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나가라고...  
아무 소리 안 해줬어. 그리고 재판이 끝나서 한참 뭘 기자들이  
묻고 그러고 뭐하고. 그때 재판 끝나서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조선일보 기자 한 사람이 웃으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지금  
개업하시면 굉장히 사건이 많이 올 텐데 언제 개업하시냐”고. 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웃으면 내가 뭐가 돼요? 웃지도 않고  
그 말에 답변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  
때쯤 되면 그때 개업하겠다” 그리고 웃지도 않았어. 그리고 다음  
사람 질문 얼른 넘겼지. 그리고 그 친구 놈두면 또 다른 거 물을  
지 모르니까 다른 데 물었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내가.

면담자: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도 하셨죠.

구술자: 물었지. 다른 재판하고 똑같이 했어요. 뭐냐면 불러낼 때도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피고인 아무개, 아무개 해가지고 다 불러서 나오게 했다고. 뭐 저기 어딘가 신문을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나올 때 법원을 향해서 손으로 어떻게 하고 했다고, 난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보통 사람들 재판할 때 불러내는 거 마냥 똑같이 불러냈어요. 그렇게 했지.

면담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구술자: 예. 다음 질문.

면담자: 예. 1994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한일합섬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셨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공권력이 기업 활동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이지 않았던 계약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1993년 7월 29일이죠, 양전 회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과 재판관님의 판단 사이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현재 위헌 결정이 당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이거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걸 저기 김혜영씨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판결문) 받아가지고 다시 쪽 봤는데, 우리 판결이 잘못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한 거하고 부딪힌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판결한 건 그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사법적 시각에서 세분해서 그걸 이해하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뭉뚱그러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저촉되는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촉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별로 영향을 안 미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면담자: 현재에서는 “당시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제 그룹 해체를 위해서 취한 그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재판관님께서 그 때 본 거는 사법적 영역에서...

구술자: 예, 계약 관계지?

면담자: 그렇죠, 예.

구술자: 그건 관계없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현재에서 판단한 건 전체적으로 아마 판단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게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면담자: 그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확정이 됐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 3. 헌법재판관 시절 주요 사건(1)

면담자: 그 뒤에 1999년 12월에 이재화 재판관 후임으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될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까?

구술자: 판사를 하면선 보통 대법원 갈 것만 꿈으로 가지고 있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어떻게 헌법재판, 저 부산지방법원장을 내가 끝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당시에 이제 누구야 그 대법원장이...

면담자: 최종영.

구술자: 예, 최종영 대법원장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더라고요.

면담자: 처음에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셨지 않았나요?

구술자: 올랐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법관 될 걸로 했는데 그 양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대법원에 가서 좀 있으면 곧 헌재 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걸 얘기를 안 해야 될 건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웃음) 그래서 헌법재판, 일반 재판하고 헌법재판과는 이게 다르죠. 일반 재판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잖아요. 원고, 피고 그 사이, 뭐 당사자 참가인 사이 요렇게만 효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효력을 갖는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국민적 효력을 갖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들,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의 쟁점”이라는 책에도 그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재판관님께서 2기 말에 들어가서 3기에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한 5년 3개월 동

안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그 기록을 보면 3130건의 사건에 관여를 하셨고 1000여 건의 법령 사건 중에서 역대 최대의 200여 건의 소수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에 따르면 그런 결과인데요. 퇴임 후 출간한 “헌법재판의 쟁점”에서는 61건의 사건이 실려 있고 그중에 다수의견이 24건, 소수의견이 3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주요 사건과 그 재판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나 또는 결정문에 기록돼 있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사실적, 혹은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01년 10월 25일 선고한 형법 241조 간통 조항 헌법소원 사건인데요. 이게 합헌으로 결정이 났는데 결정문에서는 방론으로 “다만 입법자로서는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이 돼 있어서 그 취지가 간통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술자: 우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그거 하고 행정수도 이전 사건 그 두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무현 탄핵 사건에는 굉장히 그...

면담자: 그거부터 말씀 하시겠습니까?

구술자: 아뇨, 좀 이따가 하죠. 쯔끔만, 아주 상당히 의견이 대립이 돼 있었고, 행정수도 사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 퇴임 때 청와대에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훈장을 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만둘 때 훈장 하나씩 다 받아요.

면담자: 청조.

구술자: 청조 훈장, 훈장인가 그걸 주면서 그때 나오니까 그냥 신문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나 하고 그달날 신문을 보니까 사진은 한 장도 안 나왔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소수의견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뒤로 뭐 어떻게 다 알았을 거 아녜요. 그러니까 아마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어 한 장도 안 낸 거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얘기해도 되니까 그쪽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었고. 간통죄 폐지 이거는 그 합헌인가 위헌인가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본 거라. 그래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한 건도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내가 따라간 것이 없어. 자세히 보고 한 건이라도 내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래서 그 한정위헌도 이때 아마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말까진 안 했지만 아마 좀 논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면담자: 국가배상법 한정위헌 결정 사건에 따른 재심 청구를 대법원이 각하한 재판이죠. 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중간에 청구인이 취하하는 바람에 그걸 선고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님은 판결해야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구술자: 헌재가 결정을 뭘 하면 한정위헌이 됐든 전체 위헌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법원이 헌재에 그것도 좀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났다고 그래서 항상 대법원 판결하고 병렬적으로 하면 대법원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라 말이지.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나와도 어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지. 대법원이 그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대법원의 판결이 당사자 간의 효력하고, 그다음에 헌재가 발표하는 대세적인 효력하고 관계를 아우르는 그런 판결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그 결정의 요지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의견집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면담자: 네. 의견집에...

구술자: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면담자: 예예. 설명 해 주시죠.

구술자: 이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위헌 확인 등 이래가지고 청구인은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 변경 전의 상호는 해동화재보험주식회사 이렇고, 승계참가인 해가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돼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중간에 ... 헌법소원이 취하된 걸로 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절차는 청구인들이 심판 청구의 취하로 2003년 2월 10일 날 종료되었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면담자: 그때 헌재가 여러 차례 평의 과정을 거쳐서 실체적 심리를 사실상 종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걸 취하해 버리니까 종료시켜 버리는...

구술자: 그래서 선고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절차는 청구인과 승계 청구인의 심판 청구의 취하로 2003년 2월 10일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절차가 이미 종료되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레  
가지고 주문을 선고했던 말이죠. 그 사건에서 나하고 송인준 재  
판(관)하고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견  
내가 어떻게 하기가 될 해서, 요지는 몇 군대 뽑아서 좀 낭독을  
하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비록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준용은 헌법소원 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  
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심판 절차  
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  
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심리  
의 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건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  
는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여 심판 청구의 취하  
에도 불구하고 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런 취지고. “법 제75조 7항은 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1994년 12  
월 29일 93헌바21호 결정에서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대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는 법 제75조 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27일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  
제68조 2항에 헌법소원은 재판 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재판  
제도에서는 법원은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68조 제2항을 통하여 재판 소원의 한 부분인 간접적 법률 소원을 수용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에 기인하는지에 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

면담자: 이 사건은 청구인이 취하를 하면서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게 다수의견으로 그렇게 됐지만 재판관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헌법소원 심판이 가지는 헌법 질서 보장이라는 객관적 내용을 강조해서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구술자: 예, 조금 덧붙여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대법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었죠.

면담자: 예예. 피곤하시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구술자: 예예.

#### 4. 헌법재판관 시절 주요 사건(2)

면담자: 그다음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데요. 재판관님께서서는 헌법 제72조 국민 투표권 침해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렇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글썄 관습헌법이라고 그러는데 관습헌법을 내가 부정했다기보다 관습헌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관습헌법이 뭐난 말이지.

면담자: 국가적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그건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그게 관습헌법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도 72조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석연 변호사가 어찌구저찌구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석연 변호사 얘기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각하 결정으로 났는데 이 결정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 사건 법률에 합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청구가 아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그래왔거든, 결론이. 그래서 관계가 없는데 이걸 뭐 이석연 변호사가 이것이 관계가 없는 걸 얘기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예요.

면담자: 나중에 행정복합도시 관련해서는 두 건이 제기가 됐었잖습니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긴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합헌인 걸 확인해 달라는 사건이 있었고 위헌인 걸 확인해 달라는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둘 다 각하가 됐죠.

구술자: 그건 (웃음) 내가 소상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

면담자: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들한테 딱 떨어지게 설득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술자: 아, 그래요?

면담자: 예, 이게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 재판관님께서 위헌 의견이라는 결과는 같은데 다수의견은 헌법 130조 개헌에 준하는 국민투표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결부돼서 결정을 한 거고 재판관님은 72조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뭐 다른 하실 말씀이...

구술자: (신문 스크랩을 보면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해외 신문들도 아주 (웃음) 관심이 커서 로이터(Reuters)나 뭐 AP통신, DPA통신, AFP통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에서 다 언급을 해서, 대통령이 업무 수행하는 데 큰 타격을 입었을 거다 하고 현재 결정에 대해서 선고를 한 게 많네요.

면담자: 나중에 청와대에 훈장 받으러 갔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게 겹쳐져서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까. 훈장 수여 과정에서.

구술자: 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통령은 아무 얘기 안 했죠. 대통령은 지금 본인도 가고 없고 시간도 오래 흘렀으니까 얘기지만, 내가 판사하다 그만뒀다가 이제 복직을 하고서 대구고등법원에 배석판사로 있을 때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노무현 변호사가 대구고등법원에 왔습니다. 매주 올라올 때면 이제 부산에서 오는 변호사들은 와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장실에 한번 들러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하고 그랬던 말이죠. 그때 드나들던 변호사예요. (웃음) 그래서 참 대전지방법원 판사로서 우리 후배거든 다 후배.

면담자: 그다음에 호주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주 및 자의 부가(父家)입적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관님도 합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만 그 자(子)가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있는 예외가 너무 좁다, 부가로의 입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구술자: 아, 네. 그건 지금 기억은 아삼한데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이랄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좀 균형이 덜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 똑같이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고.

면담자: 당시 호주제의 위헌성은 다 확인을 하지만 호적제도의 공백을 우려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셨죠?

구술자: 그런 것 같죠.

면담자: 그다음에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 이건 하도 복잡하고 여러 번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뒤에 2인1표제 사건 있잖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에만 투표권을 준. 이 두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고 또 개혁하지 못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한 꼴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구술자: 그거를 글썄 하여튼 헌법재판소로 보내오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계에서 했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못하고 현재로 자꾸 넘기니까 현재는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현재에 온 이상 뭐 그냥 잘 된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면담자: 저는 인구편차로 인한 표의 균등성 문제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인구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공동화되는, 그럼 거기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술자: 뭐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이죠.

면담자: 그다음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 병역법 88조 1항 1호 위헌제청 사건이죠. 여기에서 재판관님께서 합헌으로 의견을 내시고 국회에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입법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라던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구술자: 이게 양심의 자유와 병역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병역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다 양심적으로만 그렇게 하는가, 진짜 병역 거부하는 사람이 종교적 입장에서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피를 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피를 내는지 안 내는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법 권고란게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만으론 해결이 안 되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면담자: 예. 그 뒤에 계속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병역 기피자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이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구술자: 대법원에서...

면담자: 현행 조항으로도 무죄선고가 가능하다. 그 조항에 대해서 무죄 선고. 그러면서 그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병역법 5조 1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대법원도 그에 따라서 무죄 취지로 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다 합헌 의견을 내셨지만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열어 두신 거죠.

구술자: 예. 하여튼 양심의 자유와 병역 거부란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건데 하여튼 입법을 보완을 해서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잘 확인을 해가지고 병역 거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냈죠.

면담자: 예. 여기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구술자: 별 거는 없는데...

면담자: 준비하신 그 신문들은, 자료들은 어떤...

구술자: 아니, 아이 혹시 뭐.

면담자: 신행정수도 관련된 거죠?

구술자: 예. 그런 거. 신행정수도 이거는 별개의 의견, 아까 이거 읽어드렸나 모르겠네.

면담자: 그건 안 읽으신 거 같은데.

구술자: 안 읽었죠? 요건. 제가 다른 재판관들하고 달리 별개의견 요지를 냈는데 그 의견이 여기 실렸는데 아까 얘기한 걸로 그냥 대신하죠.

## 5.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 경험

면담자: 예예예. 재판관님을 항상 얘기할 때 엄격이라든가 절제라든가 명쾌, 이런 단어로 자주 표현되거든요. 강직한 성품이시고 성실하고 절제된 자세, 치밀한 기록 검토, 그리고 명쾌한 결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한 심리 진행 이런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재판관 시절을 돌아보실 때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이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구술자: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고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거. 대통령 탄핵사건 하고 뭐 수도 이전 사건 두 건이...

면담자: 아 그게...

구술자: 생각이 나고 그 이외에 뭔가 무슨 사건인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각하를 하지만은 조금 의견을 붙인 게 한두 건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각하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뭘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건 좀 별도의 예를 붙인 게 두 건 정도 있



을 겁니다. 각하하면 사실 아무 할 얘기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각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는 좀 붙여 줘야 된다 그래서 붙인 게 뭐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사건인지 생각 안 나, 안 나서 뭐 얘기를 못하겠고.

면담자: 예. 주로 3기 재판부에서 활동을 하셨잖습니까.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런데 그 전의 1기, 2기 재판부하고 3기 재판부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원이라는 게 좀 달라졌으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재판소의 구성이나 심판 절차, 평의 방식이나 행정 사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좋구요. 1, 2기와 3기 재판 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글썄 (웃음) 여길 봤는데 그걸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난 그저 나한테 맡겨진 주심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열심히 보고 의견 표시하고 그런 것뿐이지 뭐 그다음에 분위기가 어떤가 그건 지금 (웃음) 얘기할 만큼 내가 알고 있지 않은데. 10개월 정도, 2000년도 김용준 소장 때가 아주 10개월 정도 같이 있다가 그 나머지를 윤영철 소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면담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 여러 분야의 각계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님께서서는 법정신을 찾고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은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반론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여기에 질문 사항에도 보면 “사회 각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깁니까? 판사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헌법재판관은 판사보다 더 생각이 넓고, 판사는 정말 당사자 간의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모든 사건을 다 일반적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그런 것인데 판사보다 안목이 넓고 안목이 더 깊어야 된다, 그런데 일반인이 뭐 사회적인 안목이 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오는 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걸 도대체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면담자: 여러 가지 어떤 법률의 전문성이랄까...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구술자: 시각이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사건이 하나 오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관계 되는 법률, 헌법재판소법 이걸 놓고 사회 깊이를 다 뒤져가지고 그다음에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보다 훨씬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판사가 아닌 사람이 시각을 갖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판사 아닌 사람이 시각을 암만 좋게 가져도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에, 고등고시에 합격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하느냐 말이지.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까도 몇 번씩 얘기했다만, 헌법재판관이 무슨 사회의 깊이 이런 걸 좀 잘 알고 노력하고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면담자: 예. 퇴임하실 때 소감이 좀 남달랐을 거 같은데요. 헌법재판관으로 소임을 다 마치고 퇴임하실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구술자: 그 안에 있을 때 한 건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빼 놓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 했어요. 그땐 참 몸이 안 좋거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9살에 당뇨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죽 조심을 하면서 사는데 현재에 있으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사건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중간에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당뇨가 아주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동안에 한 일주일 쉬기도 했죠. 윤영철 소장이 참 시간을 쥐가지고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땐 말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말도 그냥 제대로 못 하고 입원해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 의사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 약이라도 뭐 안 주느냐”, “아니 뭐 약 드릴 게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아니 그게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뭐 한 두어 가지 타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참 나왔을 땐 참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윤영철 소장님이 아끼는 바람에 굉장히 잘 지내고 그랬죠. 나올 땐 이렇게 보고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얼굴 색깔이 안 좋다고, 얼굴이 왜 누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먼저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먼저 하고 몸 관리를 하니까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면담자: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재판관 시절에 무리를 많이 하신 셈이죠.

구술자: 예, 그렇죠.

면담자: 헌법재판관 시절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보람을 느꼈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보람을 느꼈다는 거는 참 나한테 이렇게 큰 자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한 건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할라고 했어요. 그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무리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죠.

면담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람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당사자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모든 국민한테 해당된다 이런 거...

구술자: 그렇죠. 일반 재판과는, 법원의 재판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사명을 일단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거고 한 건도 정말 거스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한 거죠.

면담자: 예. 재판관 시절에 업무량은 굉장히 많았습니까?

구술자: 많았죠.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면담자: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고요?

구술자: 글썄, 내 몸이 좋지가 않으니깐 상당히 힘들게 했죠.

면담자: 요즘 얘기가 자주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

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일반 재판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우리 제도의 장단점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와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관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구술자: 글썄요. 그건 말이죠. 이게 일반 재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하고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놓는 것이 그게 잘못됐어요. 이제까지 몇 차례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사항이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일반 재판이 1 대 1의 재판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광범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차이를 두든가 무슨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병렬적으로 놓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 가운데에서 일반 법원의 재판하고 관계된 것 중에서 맘에 안 드는 건 일반 재판소(법원)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건 병렬적일 수가 없다 이거죠. 다루는 일의 질로 봐서 요건 1 대 1, 일반인의 1 대 1 재판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재판인데 이걸 어떻게 1 대 1로 놓고 얘기를 하느냐 이 거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니까 현재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연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재판소(법원)를 능가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송인준 재판관하고 둘이 72조에 관한 소수의견을 낸 것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일반재판소(법원)와 똑같이 하려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헌법재판소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시야라든지 헌법재판관의 시야라든지 그 노력이 일반 재판, 일반 법관하고는 다른 시야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면담자: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그리고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할 점, 미래의 헌법재판관에게 조언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 그 애긴데. (웃음) 뭐 더 할 게 없네요.

## 6. 역경에 대한 소회

면담자: 이제까지 제가 여쭙본 거 외에도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구술자: 아까 어렸을 때 시절 얘기하다가 좀 빼먹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새벽에 아까 남대문 도서관에 가서 뭐 한 다섯 번 내지 일곱 번째로 들어갔다는 얘기했는데, 중학교 시절 남대문도서관에 가고 그럴 때 겨울이면 한남동 집에서 삼각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니까. 일곱 시부터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내지 일곱 번째로 도착하려면 일찍 떠나는 길밖에 없는데 아침에 여섯시 쯤 해서 출발해서 나가면 한남동에서 삼각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겨울에 눈 올 때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난 데가 있지만 내 발자국이 첫 번째 발짝인 그런 때가 아주 여러 날 있었어요. 그럼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전차 타고 가서 거기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지냈는지는 참 꿈같아요, 꿈같고. 그걸 처음 그렇게 나가고 그럴 때 거길 나가면서 고생이 아주 심한데도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냥 나가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뭐 다 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이행해서 하고.

면담자: 형제가 많은 집안에 제일 만이시니까 집안에 대한 부담들, 집안을 여러 가지 돌봐야 될 부담이 있었을 텐데. 부담에서 벗어난 건 언제쯤입니까?

구술자: (웃음) 나는 저기 형제가 많아도 형제를 닮거나 ‘왜 형제를 많이 낳았소’ 이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불만을 가졌으면 뭐. 지금까지도 형제간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집이 참 없어서 저기 집이 불타서 없어가지고 대지 30평짜리에다가 한 20평짜리 돌담집을 짓고 가운데 마루 양 쪽에 방 짓는데 고시 합격할 때만 해도 안방만 있었고 건너방은 채 방으로 들여놓지도 못할 때예요. 그래 어머니가 그걸 싸주고 그러면 한남동에서 그 버티고개라고 그러지 거길 넘어서 이렇게 해서...

면담자: 장충동 쪽으로요?

구술자: 예. 장충동 쪽은 나중이고 그 저 뭐라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경기고등학교까지 걸어 다니는데 도서관에서 저 고시공부 할 때는 그리 가가지고 올 때는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와야 되니까 장충동에서 버티고개는 못 넘어옵니다. 겁이 나서. 우리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에 거기서 학교 선생님이 교사들 봉급을 타가지고 오다가 강도한테 얻어맞아 죽은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겁도 나고. 사람이 그땐 밤 10시만 되면 넘나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오고, 약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 오죠. 아휴. 생각하면 집에 오는데 거기 또 기와집하고 잘사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오면 아이고 뒤에서 또 쫓아오는 것 같은, 뛰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빨리 뛰어야 돼. 가방을 함께 뛰고 오고. 아까 뭐 그런 얘길 했지만 아이고 기차길에 나가서 죽을 뻔한 것, 그런 생

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6·25때도 6월 28일 날 의정부 쪽에서 대포 사격이 막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6월 29일 날 새벽에 그냥 남산에서 강 건너를 향해서 포를 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바람에 깬어요. 그래서 그날 낮에 동네 아저씨가 배를 타고 강 건너로 이동하는, 아침나절에 남산을 쏘던 사람들이 철로 쪽에 와서 쏘다가 오후엔 잠잠해졌어. 오전엔 물 건너로 도망갔던 군인들이 모래를 파고 거기서 뭐 있다가 그냥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하나 가득 사람이 찼잖아요. 그니까 살살 저어 가는데 그때 비가 좀 와서 물이 좀 불어서 그런데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이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다 그냥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배가 타고 가는데 사람이 딱 찼으니까 저어 가는데 거 찰랑 하더니 물이 조금 넘어와 (웃음)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는 데 있는 사람이 그냥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쪽으로 그냥 갈려고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물 들어온다고 아저씨가 그냥 고함을 지르고. 앞서서 깔딱깔딱 물이 몇 번 들어오는 걸 참고 건너갔는데 그래서 분당에 우리 고모님 사시는 집까지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뒤로도 옛날 얘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장남이고 어린 동생들 그땐 네 명인가 낳았을 때니까. 수영도 못하게 했어.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수영도 못 배웠어요. 친구들이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못 배워 가지고 6·25 나고 나서 그다음에 머리 박고 개혜엄만 조금 치고 그랬는데. 아이고 거기서 죽을 뻔 했어요. 거기 아주 바위가 있고 그 앞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애들이 가서 수영하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가면 돌이 하나 물속에 박힌 돌이 예를 들어 사람이 일어나면 선단 말이야. 거기 한 10미터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개혜엄을 치고 가는데 아니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빠질라 그러니까 아니 동네 형이 “아어어어어, 어어어” 그러면서 쫓아와서 여길 잡고 그냥 끄집어내서 살았어요. 그런 거 하며 철로 독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하며 뭐하며 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귀한 생명이, 참 그때 참 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면담자: 어렸던 시절이 많이 생각나시는 모양이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두 시간 가량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할까요?

구술자: 예예.

면담자: 5년 3개월이죠. 5년 3개월 동안 헌법재판관을 하시면서 많은 결정과 의견을 내셔서 우리 헌법, 헌법재판의 여러 가지 선례를 많이 세우신 김영일 전 재판관님에 대한 구술채록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감사합니다.